

장애 아동의 부모/보호자를 위한 절차적 보호책에 대한 통보 (2008년 1월 기준)

특수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거나 혹은 받을 자격이 되는 장애를 가진 학생 또는 성인 학생의 부모/보호자로서, 귀하는 주와 연방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명시된 권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귀하의 자녀가 속한 교육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주의하여 읽은 후에 자녀가 받을 서비스 혹은 귀하에게 제공 가능한 절차적 보호책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적 보호책에 대한 통보는 일 년에 단 한 번만 가능합니다. 단, 첫 평가 요청 시 한 부를 제공 받아야 하며, 직업 변화를 일으키는 징계 해임 시 혹은 요청에 의해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에 대한 최초 민원 청구 또는 최초 정당한 절차적 민원 청구에 대한 영수증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ISBE 웹사이트 www.isbe.net/spec-ed/에 있는 “A Parents’ Guide: The Educational Righ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학부모를 위한 안내서: 장애 학생의 교육적 권리)”라는 제목의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서면 통보

지역 교육청은 귀하에게 사전 서면 통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교육청이 귀 자녀에 대해 신원 증명, 평가, 교육적 배정, 또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의 제공을 시작하거나 개정할 것을 제안할 때
- 교육청이 귀하의 자녀에 대해 신원 증명, 평가, 교육적 배정, 또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의 제공을 시작하거나 개정할 것을 거부할 때
- 혹은 자녀가 성년의 나이(18세)가 되기 1년 전에. 별도의 결정 외에는 모든 교육 권리는 부모(들)/보호자(들)에서 학생으로 이전됨

서면 통보는 제안했거나 거부한 활동이 시작하기 최소한 10일 전에 제공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교육청에서 제안했거나 거부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교육청의 활동 제안 또는 거부에 대한 이유와 교육청이 고려한 기타 옵션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 옵션들이 거부된 이유
- 교육청의 활동 제안 혹은 거부의 근거로 사용된 평가 절차, 시험, 기록 또는 보고서 각각에 대한 설명
- 교육청의 제안 혹은 거부와 관련된 기타 요인에 대한 설명
- 귀하가 정당한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진술과 더불어, 통보가 평가를 위한 최초의 언급이 아니라면 절차적 보호책 한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 귀하의 정당한 법적 절차의 이해와 관련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공급자

통보는 반드시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명백히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귀하의 모국어 또는 귀하가 사용하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이 문자 언어가 아니라면, 지역 교육청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 통보가 귀하의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통역될 것과, (b) 귀하가 통보의 내용을 이해할 것과, (c) 이러한 요구사항이 지켜졌다는 증명 서류의 확보.

부모 동의

귀하의 정보에 근거한 동의는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모든 관련된 정보가 귀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귀하가 활동에 대해 서면으로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지역 행정부는 반드시 귀하의 정보에 근거한 동의 (주에서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여)를 얻어야 합니다.

- ◆ 초기 평가 -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알아보기 위한 초기 평가의 실행 시
- ◆ 초기 서비스/배정 - 귀하 자녀에게 특수교육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할 때
- ◆ 재평가 - 귀하 자녀를 재평가할 때

이 지정된 양식에 명시되어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는 보험 혜택의 이용에 대한 동의와 IEP 대신 IFSP를 쓰겠다는 동의, 그리고 귀하 자녀의 기록을 공개하겠다는 동의를 포함합니다. 추가로, 지역 교육청은 동의가 요구되는 서비스와 활동을 제외하고 귀하 혹은 귀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혜택에 대한 조건으로 귀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주 내의 기숙사에 살고 귀하와 주거하지 않고 있다면, 교육청은 초기 평가를 위한 귀하의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도록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육청이 합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거처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일리노이주 법으로 인해 귀하의 권리가 종결되었거나, 혹은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판사가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귀하의 권리를 박탈하고 판사가 지정한 자녀 대표인이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를 한다면, 교육청은 귀하의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을 의무가 없습니다.

시험 또는 평가의 실행 이전에 모든 아동의 부모로부터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한, 귀하의 동의는 교육청이 평가 혹은 재평가의 일부로서 현존하는 정보를 검토하기 전 또는 귀하가 속한 교육청이 모든 아동에게 실시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행하기 전에 요구되지 않습니다.

부모 동의의 부재

다음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다면, 특정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초기 평가 - 초기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제공에 대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교육청은 중재 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청문회를 통해 초기 평가의 실행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청문회가 열리면 청문회의 관리가 귀하의 동의 없이 초기 평가 실행을 실시하도록 교육청에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을

호소하고 행정적 또는 사법적 소송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귀 자녀가 자신의 현재 교육 배정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줍니다.

- ◆ 초기 서비스/배정 - 특수교육 혹은 관련된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교육청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서비스 제공을 허락하는 판정을 얻기 위해 중재 혹은 정당한 절차에 대한 수속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특수교육 혹은 관련된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해 동의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교육청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제공이라는 교육청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교육청은 귀 자녀를 위한 IEP를 개발하기 위한 모임을 소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 ◆ 재평가 - 귀하가 재평가에 대해 동의하기를 거부한다면, 교육청은 요구된 사항은 아니지만 중재 혹은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를 통해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결정할 시에는 귀하의 자녀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제공이란 사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임 참여

귀하는 자녀의 신원 조회, 평가, 자격, 재평가, 그리고 교육적 배치에 대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모임 개최 10 일 전에 서면 통보를 귀하에게 줘야 합니다. 통보는 모임의 목적과 서로간에 적합한 모임 장소와 시간 및 누가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IEP 모임에 대한 공지는 귀하가 귀하의 자녀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초청하여 귀하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귀하에게 있다는 성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는 부모로서 귀하 자녀의 IEP 팀의 중요한 일원이며, 자녀의 교육 배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모임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교육청은 귀하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 혹은 회의에서 전화를 거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받을 서비스와 배정에 대한 결정은 귀하의 모임 참여 없이도 IEP 팀에서 내릴 수 있지만, 상세한 전화 내용과 전화 내용의 결과, 그리고 귀하에게 보낸 서신과 답신 혹은 귀하의 자택 또는 직장 방문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방문 결과를 포함하여 교육청은 상호 동의된 모임 시간과 장소의 준비 시도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14 세 6 개월의 아동이나 그보다 어리지만 IEP 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통보는 모임의 목적 중 하나가 귀하 자녀의 이행 서비스 요구에 대한 진술의 발달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또한 교육청이 귀하의 자녀를 모임에 초대할 것과 모임에 대표자를 보낼 초대된 외부 기관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청각장애가 있거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통역가를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귀하와 자녀가 모임의 진행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EP 팀은 반드시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만나야 하며, 매 학년의 시작 전까지 귀하의 자녀를 위한 IEP 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간 모임 이후에는, 귀하와 학교측은 자녀의 IEP 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IEP 를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신 기록 문서를 통해 IEP 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IEP 팀 구성원들은 정정 사항에 대해서 통보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어느 때든지 귀하와 학교 양측에게 편한 시간에 IEP 모임을 가질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절차

귀하의 교육청은 귀하의 자녀에 대해 평가를 수행할 때 다양한 평가 도구와 전략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평가는 의심된 장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교육청은 귀하 자녀의 인종, 문화, 언어, 또는 장애에 대해 편견이 없는 기술적으로 건전한 기구와 절차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도구와 절차는 귀하의 자녀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녀가 능한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되고 실시되어야 합니다.

초기 평가

귀하 혹은 교육청에서 자녀의 초기 평가에 대한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교육청은 귀하의 서면 동의를 받은 이후로부터 60일의 수업 일수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평가는 반드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실시해야 하며, 귀하의 투자가 포함됩니다. 만약 읽기와 산수에 대한 적절한 지도의 부족이나 제한된 영어 능력이 결정적인 요소로 판정된다면, 귀하의 자녀는 장애아동이라 판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평가

재평가 후에는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학교측에서 귀하의 자녀를 반드시 재평가해야 하지만, 귀하와 학교 측에서 재평가가 불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자적 교육 평가

‘독자적 교육 평가’란 교육청에서 고용한 사람이 아닌, 귀하가 지정한 적합한 사람이 실행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만약 귀하가 지역 교육청에서 얻은 평가에 대해 반대한다면, 귀하는 공적인 비용으로 독자적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독자적 교육 평가를 위해 교육청이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청할 시에는, 학교 측은 반드시 불필요한 지체 없이 지불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를 요청하여 학교 측의 평가가 적합하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교육청은 평가에 반대하는 귀하의 이유에 대해 물을 수는 있지만, 불합리하게 지체하거나 귀하의 이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여 평가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독자적 교육 평가를 지불하기로 동의한다면, 귀하의 요청 시 독자적 교육 평가 수혜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 측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독자적 평가가 공공비용으로 실시되는 모든 경우에는 평가의 장소 및 평가자의 자격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가 속한 항목은 교육청이 평가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항목과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청이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회의 관리가 평가를 지시하면, 평가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공공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관리의 최종 결정이 교육청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이라면, 귀하는 여전히 독자적 교육 평가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자비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비로 독자적 교육 평가를 받는다면, 평가의 결과는 귀하의 자녀의 무상의 적합한 공교육과 관련된 어떤 결정이든지 반드시 교육청에 의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에 독자적 교육 평가를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배정

이 부분은 귀하가 자녀를 사립학교/기관에 자발적으로 배정할 때 귀하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FAPE가 고려되지 않을 시 사립학교 배정

주 내에 거주하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포함하여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 아동들은 반드시 거처가 확인되고, 신원이 확인되며, 평가 받아야 합니다. 'Child Find'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사립 학교 또는 홈스쿨이 위치한 공립 학교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Child Find는 3년간의 재평가를 포함합니다. 이 문서에 설명되어 있는 신원 확인과 평가에 대한 권리는 자녀를 사립 학교/시설에 입학시키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귀하의 자녀를 사립 학교에 입학하도록 결정할 때에는, 자녀가 공립학교 입학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전혀 없게 됩니다. 몇몇의 특수교육 서비스는 자녀가 사립학교 입학 시에도 제공될 수 있지만, 그 종류와 양은 그 사립학교가 위치한 구역의 공립 학교가 사립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제한될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대표들과 사립학교에 입학한 장애 아동의 학부모 대표단과 함께 상의한 후 공립 학교의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공립학교는 사립학교 서비스에 배정된 제한적인 연방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공립학교가 귀하의 자녀에게 어떤 종류의 서비스라도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서비스 계획(services plan)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계획은 목표와 자녀에게 적합한 전통적인 IEP의 요소들, 그리고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FAPE가 고려될 시 사립학교 배정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신념 하에 귀하의 자녀를 비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또는 청문회의 관리가 교육청으로부터 자녀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입학 전 때에 맞춰서 관리가 그 입학 비용을 귀하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로부터 받은 배상 비용은 삭감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나오기 전 가장 최근의 IEP 모임에서 IEP 팀에게 교육청이 제안한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내지 자녀를 비공립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시키려는 귀하의 고민과 의도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만약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나오기 영업일 수로 (영업일에 있는 휴일을 포함하여) 열흘 전에 교육청에 위 사항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만약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나오기 전에 교육청이 귀하에게 자녀에 대한 평가 계획을 알렸는데, 자녀가 평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경우
- 재판 조사 결과 귀하의 불합리한 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로 배상 비용이 삭감되거나 거절될 수 없습니다.

- 부모/보호자가 영어로 읽거나 쓰는 능력이 없을 때
- 통지 요구사항을 지켰을 때 귀하의 자녀에게 신체적 혹은 심각한 정서적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학교 측에서 귀하가 그런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경우
- 위에 언급된 통지 요구사항에 대해 주지를 받지 못한 경우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훈육

만약 자녀의 행동이 자녀 본인의 학습이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다면, 긍정적 행동 개입법과 지지를 포함한 전략이 자녀의 IEP 발달 과정 가운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기 정학(10일 또는 그 이하)

만약 귀하의 자녀가 학생 행동 수칙을 위반한다면, 학교 관계자가 자녀를 현 위치에서 학기 중 10일 또는 그 이하의 시간 동안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교육청은 정학 기간 동안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장기 정확

학기 중 총 10일 그 이상의 정확은 청학 패턴과 각 정확 기간, 자녀가 학기 중 학교에서 떨어져 있는 총 기간, 그리고 각 정확 기간 사이의 시간과 같은 요소에 따라 배정에 변화를 야기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훈계적 정확이 총 10일의 수업일수를 넘는 경우엔, 교육청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반드시 이어서 해야 합니다. 자녀의 선생님 중 적어도 한 사람 이상과의 상의를 거친 학교 관계자는 귀하의 자녀가 일반 교과 과정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비록 다른 장소에 있지만 서비스가 어느 한도까지 필요한지 반드시 결정해야 하고, 정확 기간 동안 설정된 IEP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학기 중 10일이 넘는 훈계적 정확을 받으면 학교 관리들이 배정 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청 측의 결정에 대해 귀하에게 통지해야 하며, 정확 결정이 내려진 동일한 날에 귀하에게 절차적 보호책을 한 부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의 선생님 중 적어도 한 사람 이상과의 상의를 거친 학교 관계자는 정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자녀가 필요로 하는 지 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적 행동 평가 및 행동 개입 서비스와 수정을 제공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동 위반을 제기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추가로, IEP 모음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집되어야 하며, 다만 표명 결정 심사를 치르기 위해서 정확 결정 후 10일의 수업일수 이내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징후 결정 심사 (MDR)

징후 결정 심사를 실시할 시에 IEP 팀은 자녀의 IEP, 직원 관찰, 그리고 귀하가 제공한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귀하 자녀의 파일에 있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고려할 것입니다. IEP 팀은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 ◆ 행동이 귀하의 자녀의 장애 때문에 유발되었는지 또는 장애와 직접적이며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 ◆ 행동이 자녀의 IEP를 도입하는 데 실패한 교육청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

만약 팀에서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귀하의 자녀의 행동은 장애에 의한 징후라고 여겨져야 합니다.

A. 장애의 징후

행동이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IEP 팀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배정에 변화를 유발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교육청에서 그러한 평가를 이미 실시하지 않았다면 기능적 행동 평가의 실시와 행동 중재 계획의 도입

- 행동 중재 계획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는, 문제행동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중재 계획의 재검토 또는 계획의 수정
- 자녀가 마약, 흡기,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로 인해 잠정적 대안 교육 장소로 이동되었을 때를 제외하고, 귀하와 교육청이 배정 이전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닐 때엔 배제되었던 곳으로 다시 자녀를 돌려보내는 것(잠정적 대안 교육 장소에 대해서는 아래 정보 참조).

B. 장애의 징후가 아닌 경우

만약 귀하의 자녀의 행동이 자녀의 장애와 관련이 없다고 판정된다면, 10일 이상의 수업일수 동안 정확된다면 장애 학생은 반드시 무상의 적절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장애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훈계 절차가 따를 것입니다.

만약 지역 교육청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적절한 훈계 절차를 밟는다면, 교육청은 귀하 자녀의 특수교육 및 훈계 기록을 문제 행동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참고 정보로 전달해야 합니다.

신속한 적법 절차에 따른 심사

훈계 배정이나 징후 결정 심사에서 내려진 결정 가운데 반대하는 것이 있다면, 귀하는 신속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이나 ISBE는 귀하가 서면으로 신속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사를 요구할 시 반드시 심사를 마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교육청이 귀하의 자녀를 현재 배정 위치에 계속 둔다면 자녀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면, 학교 측은 자녀의 배정을 조정하여 잠정적 대안 교육 장소로 보내기 위해 신속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관리는 귀하의 자녀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라 할지라도 배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심사는 반드시 심사 요청일로부터 20일의 수업일수 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심사일로부터 10일의 수업일수 내에 판정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잠정적 대안 교육 장소 (IAES)

잠정적 대안 교육 장소는 훈계의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소는 IEP팀이 결정할 것이며, 비록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지만 귀하의 자녀가 일반 교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밟을 수 있는 장소로 선택되어야 하고, IEP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 IEP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 및 수정안이 포함된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 받아야 합니다. 대안 장소는 또한 정확을 유발한 문제 행동을 제기하기 위한 서비스와 설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을 시, 학교 관계자는 귀하의 동의 없이 자녀를 현 교육 장소에서 배제시켜 잠정적 대안 교육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 ◆ 학교 또는 학교 행사에 흥기를 가지고 올 경우
- 학교 또는 학교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불법 약물을 보유, 사용, 혹은 규제 약물을 판매 또는 권유할 경우
- 학교 또는 학교 행사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문제 행동이 자녀의 장애 징후라는 또는 징후가 아니라는 판정 여부와 상관 없이, 잠정적 대안 교육 장소로의 배제는 45일의 수업일수를 넘길 수 없습니다.

결정에 반대하여 그제 대항하기 위해 신속한 정당한 절차의 심사를 요청한다면, 귀하와 교육청 측에서 다른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귀하의 자녀는 잠정적 대안 교육 장소에 심사 계류 기간 동안 혹은 45일 수업일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머물 것입니다. 교육청은 45일의 수업일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하의 자녀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후속의 신속한 정당 심사 절차와 대안 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 요건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보호책

만약 귀하의 자녀가 특수교육에 대한 자격 요건이 없다고 판정되었지만, 훈계를 야기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귀하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있다면,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훈계 과정 가운데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교육청이 자녀의 장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서면으로 (혹은 부모/보호자가 읽거나 쓰는 능력이 없으면)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걱정을 표현한 경우
- ◆ 자녀의 행동이나 학교 생활에서 특수교육의 필요성이 보이는 경우
- ◆ 귀하의 자녀가 특수교육이 필요한지 알기 위한 평가를 요청한 경우
- ◆ 자녀의 선생님 중 한 사람 혹은 교육청 직원이 특수교육 담당자나 다른 적합한 교육청 관계자에게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한 경우

다음의 경우, 교육청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자녀에 대한 평가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
- ◆ 귀하가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 ◆ 평가가 실행되었고 그 결과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 ◆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되어 서면으로 이 판정에 대해 귀하가 통지 받은 경우

만약 학생에 대해 훈계적 실행을 실시하기 전,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의 장애 보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학생은 비슷한 행동을 일으킨 비장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훈계적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훈계적 절차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 요청되는 평가는 반드시 신속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반드시 학교 당국이 결정한 교육 장소에 남아 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평가에 의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판정이 된다면, 지역 교육청은 반드시 적합한 특수 교육 및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 집행과 사법 당국의 실행 및 위탁

지역 교육청 또는 다른 기관들은 적절한 관계 당국에게 장애를 가진 학생이 저지른 범행을 보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주 법 집행과 사법 당국은 장애 학생이 범한 범죄에 대해 연방 또는 주 법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저지른 범죄를 보고하는 지역 교육청 또는 다른 기관들은 적절한 관계 당국의 관계자들에게 학생의 특수교육과 훈계에 대한 기록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참고하게끔 해야 합니다.

민원 해결

학생의 신원 확인, 평가, 교육적인 배정 또는 수수료의 제공, 학생에게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지역 교육청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장애를 가진 귀하의 아동 또는 여러 아동들의 권리가 침해 당했음을 주장하면서, ISBE 에게 서명된, 서면화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민원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진술의 기초에 있는 침해(들)과 사실들을 주장하는 진술
- ◆ 연관되는 학생들과 참여 학교들의 이름들과 주소들
- ◆ 고소를 위한 서명과 연락 정보
- ◆ 해당 문제에 대한 제시된 해결책

고소장에서는 침해가 고소를 받은 날짜 이전의 1 년 이상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ISBE 유효한 고소를 받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행할 것입니다.

- ◆ 귀하에게 주장들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기회 제공
- ◆ 해당 교육청에는 고소를 해결할 제안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분쟁 해결에 대한 조정 또는 대안적인 수단을 제시할 기회 제공
- ◆ 모든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고 교육청이 특수 교육 요구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결정
- ◆ 각 주장을 제기하고 사실과 결론들에 대한 소견들, ISBE 의 결정들에 대한 이유들, 어떤 교정 활동들에 대한 명령들을 포함하는 서면화된 결정서를 발급

시간 제한이 예외적인 상황들 하에서 연장되지 않는다면 또는 귀하와 교육청이 조정과 같은, 또 다른 분쟁 해결의 방법에 관련된다면, 60 일 일정 이내에서 이 활동들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적법 절차 심의(due process hearing) 주제가 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논쟁점들을 포함하는 고소가 제출된다면,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그 고소의 일부들은 일시 중지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당사자들을 포함하는 합당한 과정 심의에서 한 논쟁점이 이미 결정되었다면, 심의로부터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을 것이고 고소 과정을 통하여 그 논쟁점은 조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

일리노이주 조정 위원회는 학생들에게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됩니다. 귀하는 미정의 적법 절차 심의가 있는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적법 절차를 연기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조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교육청 모두는 자발적으로 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ISBE 에 의해 관리되고 감독되고 귀하 또는 교육청에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효과적인 조정 기술들에 있어서 훈련 받고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에 식견이 있는 자격이 있고 공평한 조정자가 조정을 할 것입니다. 조정자는 공평한 제 3자이고 각 당사자에 의한 어떤 활동을 강요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여자들의 수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한 편 당 세 사람들에 제한될 것입니다. 귀하는 변호사, 옹호자, 통역자, 다른 관련된 당사자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 동안 일어나는 모든 토론들은 기밀이 유지되며 *차후의 모든 적법 절차 심의 또는 민사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조정 동안 귀하의 자녀의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포기하도록 요청 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a) 귀하의 아동의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하고, (b) 다른 당사자가 표현하는 관심사들을 청취하고, (c) 귀하의 아동의 재능과 지역 교육청의 의무들과 재원들에 대해 현실적 이도록 요청 받을 것입니다.

귀하가 조정 과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합의는 서면화되고 귀하와 그러한 합의를 맺을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대표자 모두 합의에 서명할 것입니다. 재판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의 법정 또는 미국의 지역 법정에서 조정 합의들을 법적으로 체결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은 발생하는 조정과 조정의 결과로서 이르게 되는 어떤 *서면화된 합의(들)*의 조건들을 적어둘 목적이 아니라면 *차후의 모든 행정 소송 절차 또는 민사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조정자는 *차후의 모든 행정 소송이나 민사 소송에* 증인으로 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조정 서비스들을 요청하거나 또는 조정 시스템에 대해 더 잘 알기를 바란다면, 217/782-5589로, 또는 부모를 위해 장거리 전화료가 무료인 866/262-6663으로 일리노이 주 교육 위원회(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 특수 교육 서비스국(Division of Special Education Service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법 절차 심의

적법 절차 심의 요청

귀하는 조정과 주의 고소 절차들을 사용하는 것에 덧붙여서, 공평한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적법 절차 심의는 심의 위원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 귀하와 교육청으로부터 증거를 모으고 증언을 듣는 법적인 과정입니다. 귀하 또는 교육청은 교육청이 학생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교육 배치하는 것 또는 교육청이 자유로운, 적절한 공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의 제안 또는 거절에 대한 적법 절차 심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거주하는 교육청의 관리자에게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 학생의 이름과 주소
- 다니는 학교 이름
- 문제와 관련되는 사실들을 포함하여, 귀하가 고소하고 있는, 제안된 실시 또는 변화와 관련되는 문제의 성질에 대한 설명
- 그 당시에 부모에게 알려지고 이용될 수 있는 정도까지 제안되는 문제의 해결안

해당 교육청은 심의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5일 내에, 공평한 적법 절차 심의 위원의 지명을 요청하기 위해 보증된 우편으로 ISBE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모형 형식은 요청 시에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입니다.

귀하가 교육청에 심의 요청을 제기하는 달력 상의 5일 내에, 귀하가 최초로 심의를 요청할 시에 제기되지 않았던 논쟁점들을 망라할 수 있는 수정된 심의 요청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는 달력 상의 5일 후에, 교육청의 합의와 함께, 또는 심의 위원이 권한 부여하는 것과 함께 단지 수정된 심의 요청을 제기하도록 허용 받을 것입니다. 귀하가 최초의 심의 요청 시의 논쟁점들과 다른 논쟁점들을 제기하는 수정된 심의 요청을 제기한다면, 모든 심의 일정이 다시 시작되며, 잠재적으로 새로운 결의 세션들과 심의 전 회의들을 종결하도록 요청 받을 것입니다(아래 참조).

조정 회의

해당 교육청은 공평한 적법 절차 심의 전에, 귀하와 함께 그리고 적법 절차 심의에 대한 요청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IEP 팀의 관련된 구성원들과 함께 모임을 소집할 것입니다. 조정 회의의 목적은 귀하가 심의 동안 귀하의 요청을 그리고 요청의 기초를 형성하는 사실들을 논의하여 교육청이 그 논의를 해결할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조정 회의는

- 적법 절차 심의에 대한 교육청의 요청을 통지 받은 15일 내에 열 것이며,
-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는 교육청의 대표자를 포함할 것이고,

- 귀하가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지역 변호사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고,
- 귀하가 적법 절차 심의에 대한 귀하의 요청을 논의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귀하와 지역은 조정 회의를 보류하기 위해 서면으로 서로 합의하거나 위에서 설명한대로 조정 과정을 사용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해결 세션이 성공적이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나중 날짜에 조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해결책이 도출된다면, 당사자들은 귀하 및 해당 교육청을 구속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대표자가 서명하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시행해야 합니다. 재판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의 법정에서도 또는 미국의 지역 법정에서 서명된 합의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합의를 무효로 할 의도를 통고함으로써 합의에 서명하는 세 사업 날들 내에 그러한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30일 내에 적법 절차 심의에 대한 요청을 귀하가 만족스럽도록 해결하지 못했다면, 적법 절차 심의는 지속될 것입니다 적법 절차 심의 일정은 30일이 만료되는 때에 시작할 것입니다.

귀하와 교육청이 결의 모임을 보류하거나 조정을 사용하기를 공동으로 합의한 경우와 귀하가 적법 절차 심의에 대한 요청을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조정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모임이 열릴 때까지 조정 회의 및 적법 절차 심의에 대한 일정들을 연기하게 될 것입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귀하가 교육청이 결의 세션을 집행할 능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단정된다면 심의 위원은 귀하의 심의 요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공평한 합당한 과정 심의 위원의 지명

ISBE는 심의를 집행할 공평한 심의 위원을 지명할 것입니다. 심의 위원은 귀하의 자녀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것에 관련되는 어떤 기관의 고용인이 될 수 없고 심의에서 객관성과 상충될 어떤 개인적이거나 직업적인 이해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적법 절차 심의의 당사자에게는 심의 위원을 교체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귀하가 심의 위원의 지명을 통고 받은 후 5일 이내에 ISBE에게 서면으로 심의 위원 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ISBE는 귀하 및 교육청이 동일한 날에 서면화된 요청서들을 제출하고 이것들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 심의를 처음에 요청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교체를 고려할 것입니다. 다른 당사자의 대치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심의에 대한 당사자가 교체에 대한 적절한 요청을 제출할 때, ISBE는 3일 내에 임의로 또 다른 심의 위원을 선택하고 지명할 것입니다.

지명된 심의 위원은 당사자들이 자신이 지명된 것을 통고 받기 전에 쓸모 없어지거나 자신을 면직시킬 때, ISBE는 새로운 심의 위원을 지명할 것입니다.

심의 전의 회의

귀하와 교육청이 해결 과정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적법 절차 심의 요구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심의 위원이 허용될 수 있는 시간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한 해결 세션 과정의 종결 후 45일 내에 심의 결정이 언도되어야 합니다. 심의 위원은 심의를 집행하기 전에, 당사자들과 심의 전의 회의를 집행해야 합니다.

지명된 심의 위원은 ISBE의 서면화된 통고를 받은 후 5일 내에, 심의 전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귀하와 교육청 모두와 상담하여 심의 위원이 판단하여 전화로 또는 개인적으로 심의 전 회의를 집행해야 합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귀하도 심의 전의 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 1) 심의에서 논쟁 속에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논쟁점들
- 2) 심의에서 요청될 수 있는 증언들
- 3) 심의에서 소송을 제안하기 위해 제출될 수 있는 문서들의 목록

귀하가 귀하의 심의 요청에 포함되지 않았던 심의 전 회의에서 논쟁점들을 제기한다면, 나중의 날짜에 수정된 심의 요구를 제출하고 새로운 결의 세션과 심의 전 회의를 완료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된 심의 요청은 또한 심의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위 “적법 절차 심의 요청” 참조).

심의 위원은 심의 전 회의를 종결하는 것에 있어서,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그것을 심의 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하지만, 다음에 제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 ◆ 당사자들 또는 증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논쟁점들, 진술의 순서, 어떤 일정 조정
- ◆ 당사자 또는 심의 위원이 제기한다면, 문서들 또는 증인들의 적절성과 구체성에 대한 결정
- ◆ 심의 전 회의 동안 논의되는 것으로서 명기된(또는 합의된) 사실들의 목록

심의 전의 권리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을 가진 법률 고문과 개인들을 동반하여 조언 받을 권리
- 학생에게 속해 있는 모든 학교 기록들을 검사하고 검토하고 그러한 어떤 기록들의 사본들을 구할 권리
- 교육청의 독립적인 평가자들에 대한 목록에 접근하여 귀하 자신의 비용으로 학생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받을 권리
- 제출될 어떤 증거의 심의 전 최소한 5일 전에 통지를 받을 권리
- 심의 중인 어떤 지역 교육청 고용인의, 또는 학생의 요구들, 능력들, 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참석을 강제할 권리
- 심의 동안 통역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

- 모든 행정적 및 사법적 소송들을 끝낼 때까지 학생의 배치와 적격성 신분을 유지할 권리
- 귀 자녀의 배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또는 귀하가 교육청의 표명 결정에 또는 교육청이 학생을 임시의 대안적인 교육적인 배경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심의를 요청할 권리

심의 중의 권리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정당하고, 공평하고, 질서 있는 심의를 가질 권리
- 논쟁 중인 논쟁점을 지지하고/지지하거나 명시하는데 필요한 증거, 증언, 논증들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권리
- 심의가 공중에게 드러나지 않게 할 권리
- 귀하의 자녀에게 심의에 참석하게 할 권리
- 증인들과 대면하여 반대 심문할 권리
- 심의 이전 최소한 5일 전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할 권리

심의

ISBE와 심의 위원은 심의 위원이 각 당사자의 요청 시에 특별한 시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심의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인 후 45일 이내에 심의를 여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심의 위원은 심의를 종결시킨 후 10일 이내에, 논쟁 중인 논쟁점들, 제시되는 증거와 증언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평결, 심의 위원의 법과 질서에 대한 결정에 착수하는 서면화된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심의 위원은 교육청이 학생에게 소송의 사실들에 기초된 자유로운 적절한 공적인 교육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판결뿐만 아니라 심의 요청 시에 제기되는 모든 논쟁점들에 대한 판결을 해야 합니다(당사자들이 심의 이전에 해결하지 않는 경우).

신속히 처리되는 심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훈육” 참조), 귀하가 교육청이 훈육의 문제들로 인해서 귀하의 자녀를 현재의 교육적인 배치로부터 이동시킬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때 신속히 처리되는 심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처리되는 심의들은 정규의 적법 절차 심의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주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적법 심의와의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 신속히 처리되는 심의 요청을 제기하는 달력 상의 7일 내에 해결 세션을 소집해야 합니다.
- 심의 요청을 제기하는 20일의 수업일 내에 심의를 집행해야 합니다.
- 심의를 종결하는 10일의 수업일 내에 심의 결정이 언도되어야 합니다.
- 지명되는 심의 위원의 대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명시에 대한 요청

심의 위원회는 한 결정을 발표한 후, 각 당사자가 최종적인 결정을 명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보유할 것입니다. 귀하는 결정을 받아들인 후 5일 이내에 심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제기함으로써, 최종적인 결정의 명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시에 대한 요청은 귀하가 명시를 구하는 결정의 부분들을 상술해야 합니다. 심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ISBE에게 우편으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심의 위원회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10일 이내에 상술된 결정의 부분에 대한 명시를 발표해야 하거나 서면으로 요청에 대한 거절을 발표해야 합니다.

항소하기

적법 절차 심의 후, 심의 위원회의 최종적인 명령에 불만족한 당사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결정의 사본이 우편으로 당사자들에게 발송된 후 120일 내에 재판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의 법정에서도, 또는 미국 지역 법정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를 할 법정을 위한 서기의 사무실에서부터 그러한 소송들을 제기하는 절차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정 유지

귀하의 자녀는 계쟁 중의 적법 절차 심의 또는 어떤 재판 소송 절차 동안, 적격성 신분과 특수 교육과 심의 요청을 제기하는 때에 제공되는 관련되는 서비스들과 함께 현재의 교육 배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훈련상의 부수조건에 반응하여 학생의 배정을 변화시켰고 이 배정이 신속히 처리되는 심의에 종속된다면, 신속히 처리되는 심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 교육청의 새로운 배정을 유지할 것입니다(위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훈육” 참조).

변호사 수수료 지급

재판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은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교육 법령(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하에서 초래되는 어떤 소송에서, 타당한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수수료는 귀하의 변호사가 적법 절차 심의 소송들에서 귀하의 이해 관계를 표시하는 것과 연결하여 지게 되는 수수료입니다. 법정은 그러한 수수료를 다음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대에게 승소한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
- 경솔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근거가 없는 행동에 대한 고소 또는 차후의 소송을 제기하는 부모의 변호사에 맞서 승소한 주 교육 기관 또는 교육청
- 부모의 고소 또는 차후의 소송 사건이 괴롭히기,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시키기 또는 소송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어떤 부적당한 목적을 위해 제시되었다면, 부모의 변호사에게 맞선, 또는 부모에 맞서 승소한 주 교육 기관 또는 교육청

지급되는 수수료는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종류와 질을 위한 소송이(action 또는 proceeding) 일어나는 지역 사회에서 우세한 요금에 기초될 것입니다. 법정은 지워진

불합리한 요금, 불필요하게 오래 끈 소송들, 또는 당사자들간의 해결 합의의 존재를 포함하여 많은 요인들에 기초하여 변호사 수수료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들을 논의하도록 촉구됩니다.

교육적인 대리 부모

지역의 교육청은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들을 위해 위탁된, 또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확인되거나 소재를 찾을 수 없거나 아동이 주거 시설에서 거주하는 주의 피보호자라면, ISBE는 아동의 교육적인 권리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적인 대리 부모를 임명해야 합니다. 아동이 주의 피보호자라면, 아동의 보호를 감독하는 판사는 대안적으로 대리 부모를 임명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동행자가 없는 집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 대리 부모를 임명할 것입니다. 양 부모의 집 또는 친척 양육자의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은 더 이상 교육적인 대리 부모의 임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 부모 또는 친척 양육 제공자는 자신의 집에 배치된 각 아동의 교육적인 요구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귀하의 학교가 귀하를 대리 부모로 임명한다면, 이 서류에 설명되는 권리들 중 모두가 귀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귀하는 아동의 교육 또는 보호에 관련되는 공적인 기관의 고용인이 될 수 없고, 아동과 이해 관계의 갈등을 가질 수 없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가져야 합니다. 귀하가 거주 시설의 고용인이라면, 시설이 단지 아동을 비교육적으로 돌볼 때 그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위한 교육적인 대리 부모로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교육적인 대리 부모로서, 신원의 확인, 평가, 교육적인 배치, 자유롭고, 적절한 공적인 교육의 제공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아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기록들

지역의 교육청은 귀하의 자녀의 교육적인 기록들의 기밀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귀하는 교육청이 모으고, 유지하거나 사용하는 귀하의 자녀와 관련되는 어떤 교육적인 기록들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가집니다. 해당 교육청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그리고 학생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배치와 관련되는 어떤 모임 전에, 그리고 요청이 만들어진 후 15일 이상이 아닌 경우에 교육적인 기록을 검토하려는 요청에 따를 것입니다. 교육적인 기록들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기록들의 설명과 해석을 위한 합리적인 요청들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권리
- 귀하의 대리인이 기록들을 검사하고 검토하게 할 권리
- 교육 기록들의 사본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존되는 장소에서 그것들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유력하게 막을 것이라면 교육청에 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

지역의 교육청이 귀하가 후견인의 임무, 별거, 이혼과 같은 문제들을 관리하는 응용될 수 있는 주의 법 하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언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귀하의 자녀와 관련된 기록들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 기록이 한 사람 이상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면,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 관련되는 정보만을 검토하거나 특별한 정보를 보고받도록 허락 받을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청은 귀하가 요청할 때에, 귀하에게 교육청이 모으고, 유지시키거나 사용하는 교육적인 기록들의 형태들과 위치들의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록 조사, 검색 및 복사에 대한 비용

지역의 교육청은 정보를 조사하거나 검색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교육청은 수수료가 귀하가 그 기록들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유력하게 막지 못한다면 복사되는 기록의 페이지 당 3.5 달러 이상이 아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록 접근

교육청은 주 또는 연방 법이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귀하의 동의와 함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청은 당사자의 이름, 접근이 주어진 날짜, 당사자가 기록들을 사용할 권한을 받는 목적을 포함하여, 수집되고, 유지되거나 사용되는 교육적인 기록들에 대한 접근을 얻는 당사자들에(부모와 지역 교육청의 권한을 부여 받은 고용인들을 제외하고) 대한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부모의 요청 시에 기록들에 대한 수정

귀하가 귀하의 자녀의 기록들에 있어서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하기 쉽거나 귀하의 자녀의 권리들을 침해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교육청에 그 기록을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청은 귀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날짜로부터 15일의 수업일 내에 정보를 수정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기를 거절한다면, 귀하에게 그 거절을 통고하고 아래에 설명되는 대로 귀하가 기록들의 심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조언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요청 시에, 귀하에게 귀하의 아동의 기록들에 있어서 정보에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기록들의 심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법 절차 심의가 아니며 ISBE가 지정하는 심의 위원 앞에서 열리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의 수준에서 열리는 심의입니다.

기록들의 심의에 대한 결과로서, 정보가 부정확하고, 오해하기 쉽거나, 귀하의 자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된다면, 교육청은 정보를 수정하고 귀하에게 그렇게 하였음을 서면으로 통고해야 합니다.

기록들의 심의의 결과로서, 정보가 부정확하고, 오해하기 쉽거나 귀하의 자녀의 권리들을 침해한다는 것이 결정된다면, 교육청은 귀하에게 정보에 대해 비평하는

진술을 또는 교육청의 결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들을 제시하는 진술을 둘 권리에 대해 통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교육청이 기록 또는 논쟁되는 부분을 보존하는 동안 귀하의 자녀의 기록들의 일부로서 귀하의 자녀의 기록들 속에 두어지는 설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어떤 당사자에게 기록들을 드러낸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 또한 드러나야 합니다.

부모의 권리 이전

귀하의 자녀는 18 세의 나이에 성인 학생이 됩니다. 교육청이 달리 통고를 받지 않는 한, 그 때에 이 문서에서 논의되는 부모의 권리들의 모든 것이 그/그녀에게 이동될 것입니다. 귀하는 서면화된 통고들 이전에 요구되는 것의 모두를 받을 권리를 공유할 것이고 학교는 귀하와 귀하의 자녀 모두에게 이 통고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IEP 는 귀하의 자녀의 열일곱번째 생일에 또는 그 이전에, 귀하와 귀하의 자녀에게 자녀의 열여덟번째 생일에 이 권리들이 이동될 것이라는 것을 통고했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귀하는 이 모임에서 교육 의사결정 권한 위임 (*Delegation of Rights to Make Educational Decisions*) 양식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귀하 또는 또 다른 개인이 귀하의 자녀가 성년의 나이에 도달할 때 교육적인 관심들을 표현하도록 위임하기 위해 이 양식을 사용하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지역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의사결정 권한 위임 양식은 지정된 개인이 귀하의 자녀의 교육적인 권리들을 표현하는 것을 확인하고 귀하의 자녀의 서명뿐만 아니라 개인의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혹은 개인의 장애에 적합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 형식과 같은 수단들에 의해서). 귀하의 자녀는 어떤 때이고 권한 위임을 종결시킬 수 있고 자신의 교육적인 결정을 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의사결정 권한 위임은 서명 후 1 년 동안 효력이 있으며 해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미국의 교육부는(*Unite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이 부모 권리들에 대한 진술을 발달시켰고, 일리노이 주 교육 위원회는(*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 ISBE*) 이 진술이 일리노이 규칙을 따르도록 조정했습니다.

2004 년의 장애 교육 법령과(*Disabilities Education Act of 2004*)(*IDEA 2004*) 함께 다시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들은 2004 년, 12 월 3 일에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법령의 조항들은 2005 년 7 월 1 일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교육 위원회는(*ISBE*) 귀하에게 연방 법에 대한 변화들 하에서의 귀하의 권리들을 보고하기 위해 이 소송 절차상의 보장 조항들에 대한 공고(*Notice of Procedural Safeguards*)를 제공해 왔습니다.

정책 지침서
최소 제한 환경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

2000년 2월

주 교육위원회 공약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ISBE")는 1997년 제정된 장애인 교육법("IDEA" 97)의 요구사항들과 관련 규정 34 C.F.R. §300.550-330.556을 충족하도록 최소제한환경 ("LRE")에 관한 정책을 승인하고 채택합니다.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는 일리노이주가 사실상 타당한 최소제한환경 정책이나 관련 규칙과 규정을 두도록 연방법에 따라 규칙과 규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는 주 위원회의 통제와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공립이나 사립기관, 탁아 시설들이 최소제한환경의 신조를 알고 실천하도록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리더십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소 제한 환경에서의 편성

최소제한환경은 적절한 최대한의 정도까지 공립이나 사립기관 혹은 다른 탁아시설의 3세에서 21세 사이의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34 C.F.R. §300.550 (b)(1)].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는 숙고한 첫 편성 선택이 필요한 추가 원조와 서비스의 사용으로 정규 교육 환경이 되도록 장애 학생을 다루는 프로그램과 기관들을 감시할 것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정규 교육 환경으로부터 배제된 특수 학급, 독립된 학교교육, 혹은 다른 편성은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으로 인해 정규 교실 환경에서의 교육이 추가 원조와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만족스럽게 달성될 수 없다고 학생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팀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겨야 합니다.

대안 편성의 연속

개개의 책임 있는 공립이나 사립기관은 대안 편성의 연속이 장애 학생들의 필요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런 학생들이 특수 교육과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확실히 받는다는 확신을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에 주어야 합니다. 대안 편성의 연속은 정규 학급, 특수 학급, 특수 학교, 가정 교육에서의 교육과 병원과 기관에서의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팀은 편성 결정을 개별 장애 학생의 확인된 필요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팀은 학생 개인의 필요가 개인의 지원과 도움으로 정규 교육 교실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를 또는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를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제한환경 조항과 학생의 필요라는 견지에서 더 제한적인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성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편성을 결정한 개개의 공립이나 적절한 사립기관은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에 다음의 내용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1. 편성은 개개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에 기록된 대로 개별 장애 학생의 확인된 필요에 근거해야 하며 목표와 목적/기준이 결정된 후에 고려됩니다.
2. 장애 학생의 편성에 대한 결정은 아동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과 부모를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하며 각 학생의 확인된 특정한 필요에 부합하는 편성 선택을 고려할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내려집니다.
3. 편성 결정은 주와 연방의 법률, 규칙과 관련 규정에서 참조하여 최소제한환경 조항에 따릅니다.
4. 장애 학생들의 편성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결정됩니다.

5. 편성은 학생의 가정에서 가능한 가까이에 정해집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장애학생이 아니라면 학생이 다니게 될 학교이며, 최소제한환경에서 무료로 적절한 공립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욕구가 다른 장소를 필요로 한다고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팀이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 다른 편성이 고려됩니다.
6.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장애 학생의 전 시간제 편성은 추가 원조와 서비스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의 교육을 심대하게 저해함으로써 학생이 전체 혹은 일부의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7. 단순히 일반 교육 커리큘럼의 변경이나 지원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니면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장애 학생들이 연령에 맞는 정규 교실에 편성되는 일에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8. 적절한 최대한의 정도까지 장애 학생들은 정규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됩니다.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은 일반 교육 커리큘럼의 향상과 개입에 있어 아동 장애의 영향에 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9. 각 학생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은 학생이 주 그리고/혹은 관할 지방 평가에 참여할 것인지, 참여한다면 완전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여하한의 변경이나 조정이 적절하고 필요한지를 명시합니다. 장애 학생이 이런 평가에서 배제된다면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팀은 어떤 대안 평가 기술이 사용될 것이며 점수가 어떻게 합산돼서 보고될지를 기술합니다 (34 C.F.R. §300.138-300.139).

비학문적 환경

최소제한환경 명령은 비학문적인 서비스와 정규과목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합니다. 장애 학생을 다루는 교육청과 다른 기관들은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이 학생들에게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553). 학군이나 적절한 사립기관이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비학문적이고 정규과목 이외의 서비스/활동을 제공하거나 마련할 때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팀은 참여에 필수적인 추가 원조와 서비스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학문적이고 정규과목 이외의 서비스/활동은 식사, 휴식시간, 상담 서비스, 체육, 교통 수단, 건강 서비스, 여가 활동, 특수 이익 단체, 개별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추천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립기관에 의한 고용과 외부 채용 주선의 학생 취업을 포함해도 무방합니다 [34 C.F.R. §300.306(b)].

공립, 비공립 혹은 사립 시설의 어린이

장애 학생들이 최소제한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무료로 적절한 공립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는 적절한 공립과 사립기관 그리고 필요할 경우 관련 주립 기관과 계약을 할 것입니다.

기술적인 지원과 교육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는 장애 학생들을 다루는 공립기관의 교사와 사무관들이 최소제한환경 요구사항의 이행을 위한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는 이와 같은 노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원조와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감시 활동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는 최소제한환경 요구사항이 실행되도록 공립기관을 감시할 것입니다. 최소제한환경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가 발견하면, 직원이 공립기관의 정당성과 증거 문서를 검토하고 기관으로 하여금 여하한의 필요한 교정 행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